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25호

2020. 3. 23.

건명	논산시 출산장려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건강도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3. 13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3. 13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정부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및 충청남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2020년 모자보건 사업 지침변경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논산시 출산장려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 (제2조4항 제1호)
  - 다자녀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

### □ 검토의견

- 정부 로드맵 및 지침, 도 조례 개정에 맞게 다자녀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충청남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「정부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(2018.12.7.)」, 2020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